

## 韓國의 仲裁制度 現況

吉 慶 俊 \*

〈목 차〉

- I. 韓國仲裁制度
- II. 仲裁機關(大韓商事仲裁院)

## I. 韓國仲裁制度

### 1. 法·規則

#### 가. 仲裁法

1) 韓國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창립된 같은 해인 1966년 3월 16일 仲裁法(法律 第1767號)이 制定된 以後 字句修正 外에 仲裁法에 關한根本的인 改定이 無었습니다.

2) 그 후 UN의 傘下機構인 UNCITRAL(UN國際商去來法委員會)이 各 國의 仲裁法規들을 統一시킬 目的으로 1985年 制定하고 UN이 各 國에 採擇을 勸誘한 UNCITRAL模範國際商事仲裁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大幅 受容하여 1999. 12. 31. 改定, 2000. 1. 1.부터 新仲裁法이 效力を 發生하였습니다.

#### 나. 仲裁規則

1) 大韓商事仲裁院에서 이뤄지는 仲裁節次에 適用되는 節次規則으로서, 仲裁法에 따라 仲裁規則의 制定 및 變更은 大法院長의 承認을 받아 施行되고 있습니다(仲裁法 第41條).

2) 仲裁規則은 仲裁申請에서부터 仲裁 判定에 이르기까지 諸般仲裁節次가 詳細히 規定되어 있어, 當事者들이 同 規則을 利用하기

로 合意한 경우에는 仲裁節次를 圓滑하게 進行할 수 있습니다.

## 2. 仲裁事件

### 가. 大韓商事仲裁院 利用件數

(單位 : 件)

年度 件數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國內	61	73	82	133	110	135	132	<b>163</b>
國際	18	36	51	59	40	40	65	<b>47</b>
計	79	109	133	192	150	175	197	<b>210</b>

※ 幹旋 : 470件, 相談 : 5,372件

韓國에서 중재제도는 全部 機關仲裁(Institution Arbitration)가 活潑하게 利用되고 있고 英國, France, 獨逸 등 유럽地域에서 利用되고 있는 任意仲裁(Ad Hoc Arbitration)事例는 찾아볼 수 없으며 韓國의 唯一한 常設法定仲裁機關인 大韓商事仲裁院을 주로 利用하고 있는 當事者들을 살펴보면 大企業, 中小企業, 政府, 國營機關, 外國機關 및 企業, 個人 等입니다.

### 나. 中國 關聯 Claim 現況

2002年度 商事仲裁院에 接受된 中華 經濟圈 Claim(紛爭)은 64件으로 全體 國際事件 267件의 24%를 차지했으며, 中國은 27件, Honkong 18件, Taiwan 12件, Singapore 7件이었습니다. 그리고

紛爭金額은 中國이 83億원 이었습니다. 2001年에 同 地域은 中國 27件을 包含하여 52件이었습니다.

한편 國際事件으로서 우리나라와 交易量이 많은 美國은 37件으로 14%, 日本은 15件 6%를 차지하였고, 기타 Claim 多發 上位 國家의 現況을 살펴보면 파키스탄 12件, U.A.E 11件, 독일 9件, 프랑스 8件, 인도네시아 7件, 이태리 7件, 英國 7件, 방글라데쉬 6件, 泰國 6件을 차지하였습니다.

2002年度 大韓商事仲裁院에 接受된 Claim 總 事件(仲裁와 幹旋事件 包含)은 680件, 紛爭金額은 3,721億원으로 2001年度에 비해 件數는 6%, 紛爭金額은 9% 增加하였습니다. 國際仲裁事件은 47건으로 前年 對比 件數에서 28% 減少하고 金額은 20% 增加하였으며, 特히 中華圈은 件數, 金額이 增加하고 있음에 주지할 必要性이 있습니다.

仲裁와 幹旋 關聯 순수한 中國 Claim 事件은 總 國際事件 267件, 紛爭金額 903億원에 비해 件數는 10%(2001年 5%), 金額은 9.2%(2001年 8.8%)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仲裁 事件은 7件, 紛爭金額은 31億원으로서 全體 國際仲裁 47件의 15% (2001年度 10.7%), 金額은 3.4%(2001年度 11.8%)를 차지하였습니다. 幹旋事件은 20件(2001年 7件), 金額은 52億원(2001年 5億원)을 차지하여 全體 國際幹旋 事件 220件의 9%(2001年 3%), 紛爭金額은 292億원의 18% (2001年 3%)를 記錄하였습니다.

## ※ 原因別 發生現況 (1998年-2002年)

(單位：件)

年 度 別 原 因		1998年	1999年	2000年	2001年	2002年	計
代金未支給	仲 裁	3	3	4	4	1	15
	斡 旋	8	6	2	2	8	26
	小 計	11	9	6	6	9	41
船積遲延、 不履行	仲 裁	1	4	4	1	2	12
	斡 旋	2	1	2	1	5	11
	小 計	3	5	6	2	7	23
品質不良	仲 裁	1	-	-	-	1	2
	斡 旋	4	3	5	2	5	19
	小 計	5	3	5	2	6	21
其他	仲 裁	2	-	5	2	3	12
	斡 旋	3	2	-	2	2	9
	小 計	5	2	5	4	5	21
計	仲 裁	7	7	13	7	7	41
	斡 旋	17	12	9	7	20	65
	小 計	24	19	22	14	27	106

※ 其他 : 契約不履行, 數量不足, 原因未詳 等

對外事件이 對內事件보다 높은 比重을 보이고 있으며, 仲裁 보다는 斡旋 的 增加가 뚜렷하였습니다.

向後에는 昨年度 中國과 臺灣이 WTO에 加入함에 따라 同 地域市場이 開放될 것으로豫見되어 中國을 包含한 中華經濟圈 國家와의 紛爭發生이 加速化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對中國 交易 企業體側의 CEO는 물론 實務者들의 紛爭管理 技法의 擄得과 持續的인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料됩니다.

### 3. 仲裁 適格(對象)

#### 가. 仲裁法 第1條

- 仲裁에 依하여 私法上의 紛爭을 適正, 公平, 迅速하게 解決함 을 目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 仲裁法 第3條 1號

- “仲裁”라 함은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私法上의 法律 紛爭을 法院의 裁判에 依하여 解決하지 않고 當事者들이 選定한 民間人 身分의 제3자(仲裁人)에게 그 解決을 付託하여 仲裁人이 내리는 判定에 따라 紛爭을 最終的으로 解決하는 當事者 自治의 紛爭解決制度를 말합니다.

\* 仲裁 除外對象 => 刑事, 行政, 家事審判, 非訟, 執行, 補填訴訟事件

### 4. 仲裁人 現況

#### 가. 仲裁人 數(1,023명)

區 分	現 員	區 分	現 員
國內 法曹界	225名(25%)	國內 會計士, 辦理士 等	30名(3%)
國內 實業界	262名(29%)	國內居住 外國人	29名(3%)
國內 學界	264名(30%)	國內居住 仲裁人	897名(88%)
國內 公共機關團體	87名(10%)	外國居住 仲裁人	126名(12%)

\* 外國居住 仲裁人 中, 中國 國籍 仲裁人 11名임

#### 나. 仲裁人 報酬

- 仲裁人 手當과 判定文 作成手當이 있으며, 仲裁人手當은 大韓商事仲裁院이 定하는 仲裁事務處理規程에 依據하여 申請金額別로 다음과 같은 支給합니다. 그러나 이를 超過하는 金額에 대한 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申請金額	仲裁人手當	判定文 作成手當
申請金額이 없거나 1億원 以下	400,000원	300,000원
1億원 超過 5億원 以下	600,000원	
5億원 超過 50億원 以下	1,100,000원	700,000원
50億원 超過 200億원 以下	2,000,000원	
200億원 超過 500億원 以下	2,100,000원	900,000원
500億원 超過	2,600,000원	

※ 上記 仲裁人手當 金額에 各 400,000원씩 補助支援金 追加 支給

※ 4回 超過 審理부터 每 審理마다 100,000원 追加 支給

#### 다. 仲裁人 資格

- 1) 現行 仲裁法에는 仲裁人의 資格에 대한 明示規定이 없습니다

※ 舊仲裁法 第5條 仲裁人의 缺格事由: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等

- 2) 大韓商事仲裁院의 “仲裁人名簿規程” 第3條

- “對外的 信望이 높고 仲裁의 能力이 있는 者를 委嘱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法曹界- 10年 以上, 實業界- 10年 以上, 學界·大學教授- 5年 以上, 公共團體任員- 5年 以上, 公認會計士·辦理士- 5年 以上, 駐韓外國人
  - 專門職種에 10年 以上, 國外居住者- 위 각 號 該當事項을 적용함

## 5. 公定한 仲裁 進行

- 가. 仲裁法 第1條 目的에 ‘私法上의 紛爭을 適正, 公平, 迅速하게 解決함을 目的’ 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 仲裁法 第19條에서 ‘兩當事者는 仲裁節次에서 同等한 待遇를 받아야 하고, 自身의 事案에 대하여 辯論할 수 있는 充分한 機會를 가져야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6. 仲裁判定

### 가. 公表 有無

- 仲裁規則 第8條에서 “仲裁節次는 公開하지 않는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나. 使用 言語

- 1) 仲裁法 第23條 1項에서 "仲裁節次에서 使用될 言語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고,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仲裁判定部가 指定하며, 仲裁判定部의 指定이 없는 경우에는 韓國語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2) 仲裁規則 第50條에서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節次에서 使用될 言語는 韓國語로써 한다. 다만,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으로부터 要求가 있거나 또는 仲裁人中에서 外國의 國籍을 가진 者가 있을 때는 韓國語와 英語를 公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國文과 英文으로 作成되는 仲裁判定文은 모두 이를 正本으로 한다. 그러나 國文과 英文의 仲裁判定文에 解釋上 差異가 있을 때는 韓國語에 의하여 解釋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다. 仲裁判定이 내려지게 되는 期間

- 舊仲裁法 第11條 5項에는 訓示規定으로 3個月內로 規定되어 있었고
- 現行 仲裁法에는 明示的인 規定이 없습니다.

### 7. 仲裁判定의 取消

- 가. 仲裁法 第36條 "仲裁判定取消의 訴"에서 規定하고 있습니다.  
NEWYORK協約 및 UNCITRAL 모델法 該當條項을 受容하였

습니다.

나. 仲裁判定의 取消를 求하는 當事者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를 證明하는 경우 法院은 仲裁判定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 1) 仲裁 合意의 當事者가 그 準據法에 의하여 仲裁合意 當時 無能力者이었던 事實 또는 仲裁合意가 當事者들이 指定한 法에 의하여 無效이거나 그러한 指定이 없는 경우에는 大韓民國의 法에 의하여 無效인 事實
- 2) 仲裁判定의 取消를 求하는 當事者가 仲裁人の 選定 또는 仲裁節次에 관하여 適切한 通知를 받지 못하였거나 其他의 事由로 인하여 本案에 관한 辯論을 할 수 없었던 事實
- 3) 仲裁判定이 仲裁合意의 對象이 아닌 紛爭을 다룬 事實 또는 仲裁判定이 仲裁合意의 範圍를 벗어난 事項을 다룬 事實. 다만, 仲裁判定이 仲裁合意의 對象에 관한 部分과 對象이 아닌 部分으로 分離될 수 있는 경우에는 對象이 아닌 仲裁判定部分만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 4) 仲裁判定部의 構成 또는 仲裁節次가 이 法의 強行規定에 反하지 아니 하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合意가 없는 경우에는 이 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는 事實

다. 法院이 職權으로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다고

### 認定하는 경우

- 1) 仲裁判定의 對象이 된 紛爭이 大韓民國의 法에 따라 仲裁로 解決될 수 없는 때
- 2) 仲裁判定의 承認 또는 執行이 大韓民國의 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背되는 때입니다.

## 8. 保全處分 等의 履行 確保를 위한 手段

- 가. 仲裁規則 第41條에서 “① 仲裁判定部는 當事者の 어느 一方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當事者の 權利나 紛爭의 最終判定과는 關係없이 紛爭의 對象이 된 財產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當事者の 어느 一方에게 指示할 수 있다. ② 仲裁判定部는 臨時的 處分의 申請人에게 適切한 擔保를 提供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나. 仲裁法 第10條에서 “仲裁合意의 當事者は 仲裁節次의 開始前 또는 進行中에 法院에 保全處分을 申請할 수 있다.”
- 다. 仲裁法 第18條에서 “① 當事者間에 다른 合意가 없는 경우에 仲裁判定部는 一方 當事者の 申請에 따라 決定으로 紛爭의 對象에 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臨時的 處分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仲裁判定部는 被申請人에게 臨時的 處分에 閣음하여 提供할 擔保의 金額을 定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 II. 仲裁機關(大韓商事仲裁院)

### 1. 目的

大韓商事仲裁院은 仲裁法(法律 第1767號)에 依據하여 1966. 3. 22.에 設立되었고, 大法院이 承認한 仲裁規則과 對外貿易法 및 그 施行令에 따라 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國內 唯一의 法定 常設 仲裁機關입니다. 國內外 商去來에서 發生하는 商事紛爭을 事前에豫防하고, 發生된 紛爭을 迅速하고 公正하게 解決함으로써 明朗한 商去來風土를 造成하고 나아가 對內外 信用度를 提高하여 輸出振興에 寄與하며 國家產業經濟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2. 沿革

- 1966. 3. 16 仲裁法 制定 公布(法律 第1767號)
- 1966. 3. 22 大韓商工會議所 '國際商事仲裁委員會'(仲裁院 前身)로 發足
- 1966. 10. 13 國際商事仲裁委員會 商事仲裁規則 制定(大法院 承認)
- 1970. 3. 21 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協會 設立
- 1973. 4. 3 大韓商事仲裁協會 商事仲裁規則 制定 및 施行(大法院 承認)
- 1980. 8. 29 社團法人 大韓商事仲裁院으로 擴大 改編
- 1996. 8. 5 商事仲裁規則 改定(大法院 承認), 1996. 9. 1. 施行

1999. 12. 31 仲裁法 改定(法律 第6083號)

2000. 4. 27 仲裁規則 改定(大法院 承認), 2000. 5. 15. 施行

### 3. 組織 및 業務

2부(總括支援部, 仲裁部)5팀, 1室(斡旋·相談室), 1支部(釜山支部)  
總31名

#### 가. 總括支援部

##### 1) 總務팀 : 總務, 經理, 教育, 調查, 會員管理業務

人事, 總會, 理事會 運營, 諸證明 發給, 刊行物 發注 및 發送,  
物品 購買 및 管理, 自體 및 外部 監查, 豫算 執行 및 決算,  
諸 基金 管理, 會員管理 및 會費徵收, 職員의 國內外研修 및  
調查, 職務教育 및 職員資質向上, 新規職員의 教育, 任員의  
國內研修 및 教育

##### 2) 企劃弘報팀 : 企劃, 統計, 圖書管理, 弘報, 國際協力業務

定款, 諸 規定 改廢 및 管理, 基本運營計劃과 豫算編成 및  
統制, 對政府建議 對外窗口業務, 事業實績評價 및 審查, 中·  
長期 運營計劃 樹立, Claim 統計 集計 및 分析, 業務開發 및  
制度改善, 仲裁判定事例集 및 模範契約書集 發刊, 司法研修  
生 및 軍法務官試補 仲裁受託教育, 仲裁學會 및 仲裁人協會  
業務協助, 國內外 仲裁會議 세미나 關聯 業務, 圖書 및 資料  
管理, 廣告 및 弘報資料 製作·活用, 啓蒙講座, 巡迴相談,

Internet Homepage 및 仲裁院 DB構築 및 管理, 仲裁誌 發刊, 國際仲裁協力, 仲裁協定締結 및 管理, 國內外 業務協助約定 業務

#### 나. 仲裁部

##### 1) 建設 仲裁팀

建設仲裁業務, 貸貸借 및 不動產 仲裁業務, 仲裁法規 改廢 및 管理, 仲裁制度 改善, 所管分野의 仲裁管理規則 制定, 仲裁判定 履行現況, 調查, 所管分野 仲裁判定에 關한 諸 文書 管理 保管 및 管轄法院에 關한 諸 業務

##### 2) 貿易海事 仲裁팀

貿易 및 合作投資關聯 仲裁, 海事 및 海運關聯 仲裁, 仲裁電算管理, 所管分野 仲裁管理規則 制定, 所管分野 仲裁判定에 關한 諸 文書 管理 保管 및 管轄法院에 關한 諸 業務

##### 3) 一般去來 仲裁팀

技術, 用役, 電子商去來, 知的財產權 等 其他分野 仲裁業務, 所管分野 仲裁管理規則 制定, 所管分野 仲裁判定에 關한 諸 文書 管理 保管 및 管轄法院에 關한 諸 業務, 仲裁人管理, 教育 및 懇談會

#### 다. 幹旋·相談室

國內外 Claim의 幹旋, 調停, 船積前檢查와 關聯한 紛爭調停

業務, 貿易紛爭 調整, 信賴性紛爭 調整, cLaim의 現地調查,  
Claim處理의 記錄保管, 電話, 來訪 및 書面 相談業務

2). 釜山支部

釜山, 蔚山廣域市 및 慶尚南道 地域의 仲裁, 幹旋, 調整, 相談  
및 支部 自體 運營管理業務

### Amendment to the Korean Arbitration Act

The new Korean Arbitration Act went into effect on December 31, 1999. It is mainly modeled after the UNCITRAL Model Arbitration Law to meet the goal of internationalizing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The adoption of the new Act implies significant deviation from Korean legal tradition in this field. The previous Korean Arbitration Law of 1966 was modeled after old German arbitration law in the tenth book of the 1877 German Civil Code; the German legal system has heavily influenced Korean law in general.

On the other hand, Korean arbitration practice has been more influenced by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 such as AAA, ICC, LCIA, etc. As a result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which was temporarily filled by th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in 1973. This revision authorized that the Rules of KCAB should regulate any disputes arising out of commercial transactions unless the parties have agreed otherwise. However, the new Korean Arbitration Act now attempt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 by adopting the UNCITRAL Model Law.

### Salient Features of the New Arbitration Act

These are the salient features of the new Korean Arbitration Act. In principle, the new Act applies only if the place of arbitration is in the territory of Korea. However, as an exception, the Act applies to arbitration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if and when foreign arbitral awards are accepted for enforcement (Article 2). Under the new Act, the autonomy of arbitration is broadly guaranteed by allowing the court to intervene only where so provided. If and when the assistance of the court is needed in such cases as failure to appoint arbitrators, only the court authorized by this Act may do so(Articles 6 and 7). As a rule, an arbitral agreement should be written either separately from the main contract or in the form of an arbitration clause. A court should reject any case brought before it despite arbitration agreements that have already been made except when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do so. This ensures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arbitral agreements(Articles 8 and 9).

Under the principle of autonomy, the number of arbitrators and their selection procedures are subject to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Failing such agreement, three arbitrators are to be appointed, which selection procedure is stipulated by the Act(Articles 11 and 12). Regarding the choice of arbitral procedures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parties may freely

agree on them. Failing an agreement, the arbitral tribunal shall decide these matters having regard for the parties' circumstances (Articles 20 and 21). In addition, the new Act stipulates provisions for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se, hearing procedures and evidence taking in detail(Articles 24 and 28).

Furthermore, an arbitral award should include the grounds for it, the date and the place of arbitration and signatures of all the arbitrators. And an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res judicata as a court's final judgment(Articles 32 and 35). Recourse to a court against arbitral award may be made only by an application for setting aside within three months from receipt of the arbitral award(Article 36). An arbitral award shall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virtue of the judgment made by the competent court. Domestic arbitral awards shall be enforced without delay for an early settlement of disputes, unless there is any reason for setting aside (Articles 37 and 39). Under the new Act, the government is authorized to subsidize commercial arbitration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is designated as one of these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this law(Article 40 and paragraph(3) of Supplementary Rules).